

제2절 세정관리

1.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법의 전부개정(2011. 1. 1. 시행)으로 중복·유사 세목의 통폐합으로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선진화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현 행(16개 세목)	개 편(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⑬ 도축세	폐지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지방소득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 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중업원분)

2. 2010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10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실한 운영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전 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정리 및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열린 지방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현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공정과세를 구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관리의 전산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 제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010년도 지방세(시세, 구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총괄)

[2011.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A)	(C/B)
합 계	계	389,348	331,905	315,977	81.2	95.2
	시 세	338,461	275,322	263,807	77.9	95.8
	구 세	50,887	56,583	52,170	102.5	92.2

○ 201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세부)

[2011.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A)	(C/B)
현 년 도	계		387,260	327,574	315,805	81.5	96.4
	시	소 계	337,745	274,796	264,875	78.4	98.4
		취 득 세	85,267	54,371	53,475	62.7	98.4
		등 록 세	81,035	63,011	62,952	77.7	99.9
		주 민 세	1,898	2,145	1,751	92.3	81.6
		지방소득세	71,316	59,895	57,461	80.6	95.9
		자 동 차세	26,495	31,167	27,560	104.0	88.4
		도시계획세	32,214	28,452	27,686	85.9	97.3
		공동시설세	8,515	8,488	8,160	95.8	96.1
		지역개발세	6	7	6	105.7	91.6
		지방교육세	30,999	27,260	25,824	83.3	94.7
	구	소 계	49,515	52,778	50,930	102.9	96.5
		면 허 세	825	956	917	111.2	95.9
		주 민 세	1,819	1,744	1,656	91.0	94.9
		재 산 세	42,220	44,578	42,857	99.2	96.1
		지방소득세	4,651	5,500	5,500	118.3	100.0
과 년 도	계		2,088	4,331	172	7.0	4.0
	시 세		716	526	-1,068	-149.1	-203.2
	구 세		1,372	3,805	1,240	90.4	32.6

○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목표액	245,962	300,625	373,284	368,367	389,348
부과액	327,788	397,452	374,344	367,584	331,905
징수액	284,740	383,165	360,558	350,834	315,977

다. 지방세정 운영

○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인 e-tax 서비스 및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정을 실천하였다.

○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정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세 납기전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구민을 존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 지방세 성실납세자 존중 세정운영 기반 조성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건전한 조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 등이 우리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친서민 지방세 지원 강화

서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 시행,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변제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 제외,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

류 금지기준액 상향,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등 지방세 분야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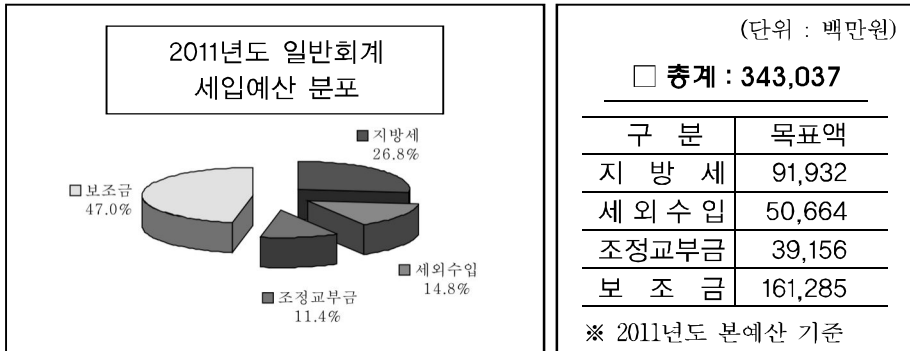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직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등록, 급여·보험금 및 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과년도 구세 체납액 3,805백만원 중 32.6%인 1,240백만원을 징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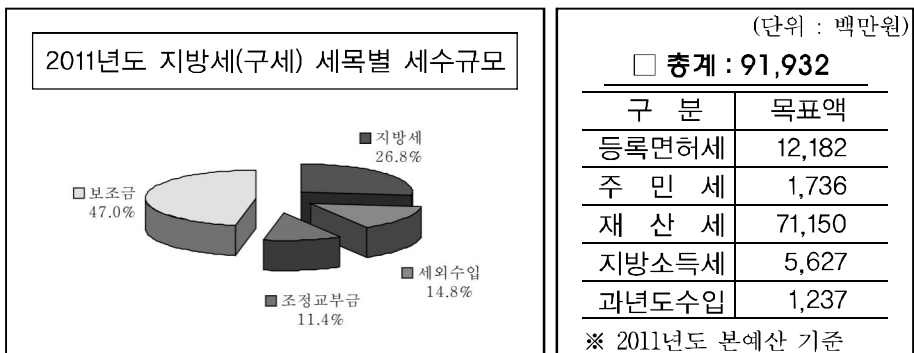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3. 2011년도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수규모

가. 2011년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나. 2011년 남동구 지방세(구세) 세목별 세수규모



4. 2011년 지방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목표액(A)	2011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계	418,447	400,722	△17,725	95.8	
	시 세	366,202	308,790	△57,412	84.3	
	구 세	52,245	91,932	39,687	176.0	
현 년 도	계	416,001	398,654	△17,347	95.8	
	시 세	소 계	365,486	307,959	△57,527	84.3
		취 득 세	102,924	170,948	68,024	166.1
		등 록 세	90,628	-	△90,628	-
		주 민 세	1,932	2,113	181	109.4
		지 방 소 득 세	72,596	67,210	△5,386	92.6
		자 동 차 세	25,390	26,359	969	103.8
		도 시 계 획 세	32,127	-	△32,127	-
		공 동 시 설 세	8,251	-	△8,251	-
		지 역 개 발 세	6	-	△6	-
		지역자원시설세	-	8,653	8,653	-
		지 방 교 육 세	31,632	32,676	1,044	103.3
	구 세	소 계	50,515	90,695	40,180	179.5
		면 허 세	825	-	△825	-
		등 록 면 허 세	-	12,182	12,182	-
		주 민 세	1,819	1,736	△83	95.4
		지 방 소 득 세	4,651	5,627	976	121.0
		재 산 세	43,220	71,150	27,930	164.6
과 년 도	계	2,446	2,068	△378	84.5	
	시 세	716	831	115	116.1	
	구 세	1,730	1,237	△493	71.5	

※ 목표액은 연도별 당초 목표액임

5.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나.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 진다.

- 첫 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 둘 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 셋 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 넷 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 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 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작다는 점이다.

다.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2011.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A)	(C/B)
계		83,341	148,115	114,905	137.9	77.6
경 상 적 수 입	소 계	23,062	23,445	23,340	101.2	99.6
	재산임대수입	446	502	492	110.3	97.9
	사 용 료 수 입	2,329	2,665	2,574	110.5	96.6
	수 수 료 수 입	8,635	8,259	8,256	95.6	100.0
	사 업 수 입	2,530	2,487	2,487	98.3	100.0
	징 수 교 부 금	7,955	8,258	8,258	103.8	100.0
	이 자 수 입	1,167	1,273	1,273	109.1	100.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60,279	124,670	91,565	151.9	73.5
	재산매각수입	13,794	12,057	12,057	87.4	100.0
	순세계잉여금	37,804	37,804	37,804	100.0	100.0
	이 월 금	4,150	34,663	34,663	835.3	100.0
	전 입 금	41	41	41	100.0	100.0
	부 담 금	736	1,282	1,259	171.1	98.2
	잡 수 입	2,465	8,021	4,067	165.0	50.7
	과 년 도 수 입	1,289	30,802	1,674	129.9	5.4

라. 세외수입 증대 추진 방안

- 1) 수수료·사용료 효율의 현실화 추진
- 2)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3) 세외수입 업무연찬 및 업무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4)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마. 2011년 세외수입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목표액(A)	2011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70,266	50,664	△19,602	72.1
소 계		26,786	26,457	△329	98.8
경 상 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419	452	33	107.9
	사 용 료 수 입	2,363	2,503	140	150.9
	수 수 료 수 입	8,635	8,802	167	101.9
	사 업 수 입	2,986	2,667	△319	89.3
	징 수 교 부 금	10,076	10,220	144	101.4
	이 자 수 입	2,307	1,813	△494	78.6
소 계		43,479	24,207	△19,272	55.7
임 시 적 수 입	재산매각수입	8,917	6,114	△2,803	68.6
	순세계잉여금	28,000	11,000	△17,000	39.3
	이 월 금	3,000	3,000	0	100.0
	전 입 금	42	0	42	-
	부 담 금	801	1,021	220	127.5
	잡 수 입	1,897	1,932	35	101.8
	과 년 도 수 입	822	1,140	318	138.7

※ 목표액은 연도별 당초 목표액임